

번호: 46/2026/NE-CP

하노이시, 2026년 1월 26일

## 시행령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시행을 조직·지도하기  
위한 조치 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 63/2025/QH15 호)에 의거;

「식품안전법」(법률 제 55/2010/QH12 호)에 의거;

보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시행을  
조직·지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 제 1장

## 일반 규정

### 제 1 조. 조정 범위

본 시행령은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안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부 규정한다:

a) 품질 기준 및 안전 기준에 관한 기술규격이 있는 식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한 적합성 공표서 등록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법」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사전포장 가공식품,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식품가공보조제, 제 18 조 제 3 항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

b) 「식품안전법」 제 15 조 제 2 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c)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3 항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d) 「식품안전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른 수입 식품의 안전 확보 조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에 관한 사항;

d) 「식품안전법」 제 39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일부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면제,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에서의 국가 식품안전 검사 절차 및 방법;

e) 「식품안전법」 제 44 조 제 3 항에 따른 식품 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의무 및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 성분의 함량 기준.

2. 다음 사항의 시행을 안내한다:

a) 「식품안전법」 제 4 장에 따른 식품의 생산·영업에 관한 식품안전 확보 조건;

b)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회수;

c) 「식품안전법」 제 36 조 제 2 항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 절차;

d) 「식품안전법」 제 40 조에 따른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절차·방법 및 방식;

d) 「식품안전법」 제 7 장에 따른 식품 광고 및 표시;

e) 「식품안전법」 제 19 조 및 제 20 조에 따른 건강보호식품의 생산·영업·보관에 관한 식품안전 확보;

g) 「식품안전법」 제 22 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영업 및 사용에 관한 식품안전 확보;

h) 「식품안전법」 제 8 장 제 1 절에 따른 국가관리 목적의 식품 시험·검사;

i) 「식품안전법」 제 8 장 제 4 절에 따른 식품 이력추적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베트남 기관, 조직·개인, 베트남에서 식품 생산·영업에 종사하는 외국 조직·개인, 베트남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이하 조직·개인이라 함)에게 적용된다.

## 제 3 조. 용어 설명

본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식품”이란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고, 신체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식품으로서 건강보호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용도 식품 및 보충식품을 포함한다.

2. “건강보호식품(Health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 Food Supplement)”이란 일상 식단에 보충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증진·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건강보호식품은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을 함유한다:

- a)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 b) 동물·광물·식물 등 자연 유래 물질로서 추출, 분리, 농축 또는 전환된 형태의 성분;
- c) 상기 a 호 및 b 호에 언급된 성분의 합성 원료.

건강보호식품은 캡슐, 환, 정제, 과립, 분말, 액상 및 기타 제형의 가공 형태로 제조하며, 소분된 단위 용량 형태로 제공한다.

3. “의료용 영양식품, 즉 특수의료용도 영양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Medical Food)”이란 경구 또는 경관 급여로 섭취하며 제조업소의 지침에 따라 환자의 식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4. “특수용도 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이란 특정 체질, 질병 상태

또는 특정 장애에 따른 식이 요구를 충족하거나 인체 기능을 증진·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성 또는 배합으로 제조된 식품을 말하며, 건강보호식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식품의 성분은 동일한 성격의 일반 식품(있는 경우)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5. “보충식품(Supplemented Food)”이란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등 미량영양소 및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보강한 식품으로서 본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 항에 규정된 제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말한다.

6. “화주”란 법령에 따라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조직·개인을 말한다.

7. “수출입 품목”이란 동일한 종류, 동일한 명칭, 동일한 상표, 동일한 제조업소 및 동일한 포장재 재질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본 시행령에서 “품목”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를 포함한다.

8. “수출입 로트”란 동일한 운송장 번호를 가진 하나 또는 여러 품목의 수입 또는 수출 화물을 말한다.

9. “소규모 1차 생산업소”란 가정 규모 또는 개인 단위로 재배, 사육, 채취, 어획 또는 채굴을 수행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력조합,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소 등) 기타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10. “소규모 전처리업소”란 가정 규모 또는 개인 단위로 식품을 전처리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력조합,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소 등) 기타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11. “소규모 식품 영업소”란 개인, 개인집단 또는 가정이 식품을 영업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력조합,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소 등) 기타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12. “식품 제품 소유자”란 식품 제품의 배합, 제조공정, 기준 또는 상표를 소유하거나,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의 권한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조직·개인을 말한다.

13.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이 있는 조직·개인”이란 제조업소, 식품 제품 소유자 또는 제조업소나 식품 제품 소유자로부터 제품 공표 서류에 명의를 위임받은 조직·개인을 말한다.

14.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시스템”이란 시험 활동과 관련된 인력, 장비, 시설, 시험방법 등 관리·기술 자료 및 검사활동 관련 문서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시험 결과의 품질, 정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15. “실험실 간 비교”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방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숙련도 시험”이란 실험실 간 비교를 통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참여 기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장

# 적합성 공표서 등록

### 제 4 조. 적합성 공표서 등록을 하는 경우

품질 기준 및 안전 기준에 관한 기술규격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하여 조직·개인은 적합성 공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포장 가공식품;
2. 식품첨가물;
3. 식품가공보조제;
4.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5.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 제 5 조. 적합성 공표서 등록 서류 및 절차

#### 1. 적합성 공표서 등록 서류:

-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별표 제 01 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 공표서;
- b) 기술규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인정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 결과서; 단, 적합성 인증 결과가 정보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 c) 본 시행령 제 7 조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제조업소 또는 식품 제품 소유자의 적합성 공표서 등록 명의 위임장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 2. 적합성 공표서 등록 절차:

- a) 조직·개인은 본 조 제 1 항에 따른 적합성 공표서 등록 서류 1 부를 온라인 방식(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부급·성급 행정절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조직·개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여러 영업소가 있는 경우, 조직·개인은 등록된 영업소 소재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b) 접수기관은 적합성 공표서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된 조직·개인의 명칭 및 제품명을 접수기관의 전자정보페이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전자정보페이지에 공개한다;

c)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는 식품의 유효한 적합성 공표서 등록 서류를 공개한다.

## 제6조. 적합성 공표서의 유효기간

1. 적합성 공표서는 적합성 인증 결과서의 유효기간에 따르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영업 과정에서 기술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개인은 신규 기술규격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다시 받고 본 시행령에 따른 적합성 공표서 등록 절차를 다시 이행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직·개인은 변경 내용을 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a호에 따른 접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 후 즉시 제품을 생산·영업할 수 있다.

## 제7조. 위임장에 관한 규정

1. 작성 언어는 베트남어, 영어 또는 베트남어·영어 병기로 한다.

2. 제품 공표 명의 위임은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임자가 식품 제품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식품 제품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와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 b) 위임받는 조직·개인의 명칭 및 주소;
  - c) 위임 범위(제품 공표의 명의자가 되고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d) 위임 대상 제품의 명칭.
3. 위임자는 위임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제품이 품질 또는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위임자와 수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3 장

# 일부 경우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보장

### 제 1 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 보장

#### 제 8 조. 유전자변형생물 및 그 산물로부터 유래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안전 보장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전자변형생물 확인서의 발급 조건, 발급 절차, 회수 및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전자변형생물의 목록은 2010년 6월 21일자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 유전자원 및 그 산물에 대한 생물안전성에 관한 규정」(제 69/2010/ND-CP 호) 및 2011년, 2018년, 2020년에 개정·보완된 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 식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 또는 그 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표시

1. 시장에서 유전자변형생물 또는 그 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으로서, 식품 생산에 사용된 총 원재료 중 5%를 초과하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 제 6장에서 규정한 상품 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본 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정보를 상품의 표시사항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 또는 그 산물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 a)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포함하나, 해당 식품에서 변형된 유전자 또는 그 산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사전포장 유전자변형식품;
- b)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가공 유전자변형식품;
- c)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긴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

**제 2 절. 수입 식품용 육상동물 제품, 수산동물 제품, 식물성 제품 및 국내 소비로 용도 변경되는 수출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제 10 조. 수입 식품용 육상동물 제품, 수산동물 제품, 식물성 제품 및 국내 소비로 용도 변경되는 수출 식품의 조건**

1. 수입 식품용 육상동물 제품, 수산동물 제품 및 식물성 제품(단, 사전포장 가공 식품, 베트남 조직·개인이 해외로 수출하였다가 반송된 식품 및 본 시행령 제 19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베트남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베트남 권한기관이 동물·식물·수산물 유래 식품의 베트남 수출 등록 국가·지역 목록에 포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유래한다;

b) 식품용 육상동물 제품 및 수산동물 제품의 경우, 베트남 법령에 따른 식품안전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베트남 권한기관의 인정을 받은 생산·영업 시설에서 생산된다;

c) 수입되는 각 동물성·수산물 유래 제품의 각 선적분은 수출국 권한기관이 발급한 식품안전 관련 규정 적합 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외국 어선이 어획·가공하거나 해상에서 매입·환적하여 지정 항만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은 제외).

2. 본 조 제 1 항에 따른 국가·지역 및 생산·영업 시설의 베트남 수출 목록 등록 절차는 본 시행령 제 28 조에 따른다.

**제 11 조. 국내 소비로 용도 변경되는 수출용 식품 원료·식품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

1. 본 시행령 제 19 조 제 3 항, 제 4 항, 제 6 항 및 제 8 항에 해당하는 제품·원료가 국내 소비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최초 수입 통관 시 관련 규정을 이미 완전히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

입 제품에 준하여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최초 신고 당시 수출용으로 생산되었으나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식품은 수입 식품에 준하는 통관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내 소비용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안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수출 후 반송되어 국내 소비로 용도 변경되는 제품·원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 절. 건강보호식품 생산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

#### 제 12 조. 건강보호식품 생산 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1. 건강보호식품 생산 시설은 「식품안전법」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일반 식품안전 보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의 원칙 및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유지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을 통제하고 공표된 기준에 부합하며 유통기한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보장한다;

b) 직무에 적합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교육과 관련 전문지식을 이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생산부서장과 품질관리부서장은 상근 정규직으로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하며, 전문책임자는 의학·약학·영양학·식품안전·식품공학 분야 중 하나 이상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다;

c) 공장·설비 및 부대시설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일방향 원칙에 따라 설계·건설·설치되어야 하며, 세척이 용이하고 혼동·오염·분진 축적 및 제품에 불리한 요인을 방지·최소화하고 일상 위생관리를 유지한다;

d) 모든 제품의 이력 및 생산시설에서의 기타 수행 활동에 대한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생산·품질관리·유통에 대한 문서·자료를 완비·보관한다;

d) 모든 생산 작업은 프로세스와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혼란, 오염 및 교차

오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 중에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적용한다.  
작업을 수행한 직후 또는 생산 단계를 완료한 직후에 결과를 기록에 기록한다;

e) 제품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품질관리 부서를 두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원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요구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되기 전에는 제품을 출고하지 아니하며, 제품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한다;

g) 위탁 시험 또는 위탁 생산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설·설비·인력을 갖추고, 건강보호식품 시험·생산 조건에 관한 권한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h) 불만 처리, 제품 회수 및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행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2. 보건부는 건강보호식품 생산 시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안내한다.

3. 건강보호식품 제조 시설은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 제 13 조.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서류, 절차 및 권한

1.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12 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서;

b) 생산구역, 생산라인, 보관구역, 시험·검사구역에 대한 전체 배치도 및 세부 도면(조직·개인의 확인을 받은 것);

c) 해당 시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비의 목록(조직·개인의 확인을 받은 것)

2.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접수 및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시설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또는 우편으로 또는 직접 보건부에 제출한다.

b)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이 요구에 따라 서류를 보완 또는 완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서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조직·개인은 신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서류 접수 기관은 평가팀을 구성하고 시설에서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규정에 따라 평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평가팀은 5-6 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 2명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경험이 있고, 1명은 시험·검사 전문 지식을 갖춘다;

d)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접수 기관은 본 시행령과 함께 공포된 부록 I의 제 14 호 서식에 따라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를 발급한다. 해당 인증서 발급 기한은 완비된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d) 시설의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평가팀은 시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평가록에 미흡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개선 작업 후 시설은 개선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평가팀에 보내야 한다. 개선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평가팀은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발급을 검토하고 보건부에 인증서 발급을 상신할 책임이 있다. 평가 완료일로부터 3개월의 기한이 지나도 시설이 요구된 대로 개선 작업을 완료하여 평가팀에 개선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e) 현장 심사 결과가 부적합(불합격)한 경우, 접수 기관은 근무일 기준 15 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해당 시설은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충족 식품안전조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접수 기관은 관할 지방 관리 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3.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설은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발급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 중, 시설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조직·개인의 법정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시설의 위치 및 인증받은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에는, 조직·개인은 변경이 발생한 즉시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조직·개인은 접수기관에 서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6. 건강보호식품 제조 조직·개인은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본 시행령 부록 I의 제 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부(식품안전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제 4 절. 식품첨가물의 생산·영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

##### 제 14 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규정

식품첨가물을 생산·영업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법」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제 1 항 및 제 2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일반 규정을 충족한다.
2. 보건부가 규정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에 한하여 혼합할 수 있으며, 그 혼합의 최종 제품은 인체 건강에 어떠한 위해도 초래하지 아니한다.
3. 식품첨가물의 소분, 분할, 재포장 또는 재충전은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보건부가 규정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한다.
2. 식품첨가물은 최대 허용 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해당 식품의 종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확한 원산지 및 출처를 갖추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 요건 및 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제 4 장

#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

### 제 16 조.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

1. 본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식품을 생산·영업하는 시설은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의 발급 조건은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강보호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본 시행령 제 12 조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업·환경 분야 및 공상 분야에 속하는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서류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이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보완·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조직·개인은 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서류의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평가를 위임하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23 호 서식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급 권한 기관에 평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에 관한 서면 문서가 있어야 한다;

평가단은 인증서 발급 권한 기관 또는 평가를 위임받은 기관이 구성 결정을 하며, 인원은 3 명 이상 5 명 이하로 한다. 이 중 최소 2 명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어야 하며, 시설의 식품 생산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단에 초빙할 수 있다;

- c)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평가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서류 접수 기관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24 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 d)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되 시정이 가능한 경우, 평가단은 시정 내용, 요구 사항 및 시정 기한을 평가 결과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시정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의 시정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평가단은 시정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론을 평가 결과서에 기재한다. 시정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본 항 제 c 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정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서류 접수 기관이 시설 평가 부적합 결과를 해당 시설 및 관할 지방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d) 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관할 지방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4. 농업·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은 각자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의 서식에 관하여 안내한다.

#### **제 17 조.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

1.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a) 소규모 초기 생산 시설;
- b) 고정된 영업 장소가 없는 식품 생산·영업 시설;
- c) 소규모 전처리(1 차 가공) 시설;
- d) 소규모 식품 영업 시설;
- d) 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및 미량영양소를 영업하는 시설;
- e)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포장재 및 용기를 생산·영업하는 시설;
- g) 호텔, 관광용 아파트 단지 및 관광용 빌라 단지 내의 음식점;

h) 식품 영업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급식소;

i) 노점상 등 길거리 음식 영업 시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은 해당되는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의 취소

### 1. 취소 권한: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및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이하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라 한다)를 발급한 기관과,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미 발급된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 2. 인증서 취소 사유:

a)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증에 식품 생산·영업 업종이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b) 12개월 이내에 식품안전법 제4장 및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c) 식품의 생산·영업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목록에 포함된 금지 물질을 사용한 경우;

d)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가공보조제에 해당하는 위조 상품을 생산한 경우;

d) 12개월 이내에 식중독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1회의 식중독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e)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 서류에 위조 문서, 위조 인장 또는 위조 서명이 사용된 경우;

g) 시설의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 서류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거나 시험 결과를 위조한 경우;

h)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장소에서 12개월 동안

생산·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권한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i)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보유한 조직·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5 장

# 수입·수출 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및 시장 유통 과정 중 검사

제 19 조. 일부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면제 대상(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

1. 법령에 따른 수입관세 면세 한도 내의 선물 및 증여품인 제품.
2.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대상자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3. 통과, 중계무역, 환적, 임시수입·재수출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제품.
4. 시험 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시험·연구용 샘플로서, 조직·개인의 확인을 받은 제품.
5. 박람회, 전시회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6.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제품.
7. 정부 또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긴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8. 수출용 상품의 가공 또는 생산에만 사용되는 수입 제품 및 원재료.
9. 국방부 장관 또는公安부 장관의 확인 문서에 따라 안보·국방 목적에 전용되는 물품.
10. 국경지역 주민의 생산 및 소비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관세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 한도 내에서 국경지역 주민 간 매매·교환이 허용된 물품 (집단 구매의 경우는 제외).

제 20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기관

1. 식품안전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농업·환경부 또는 권한 위임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국가 행정관리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수입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에 대하여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 절차, 절차적 순서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수행한다.

2.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기관 (이하 “국가 검사기관”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a) 본 시행령에 규정된 검사 방식,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에 대하여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b)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라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며, 부록 I 제 03 호 서식에 따라 검사 방식을 정밀검사에서 일반검사로, 일반검사에서 간이검사로 전환 적용하는 대상 품목에 대한 통지를 발급함;

c) 해당 검사 방식에 따라 수입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을 지정한다;

d) 본 조 제 2 항 제 c 호에 규정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식품 시험·검사 기관을 선정한다;

d)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한다;

e) 수입 로트 및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및 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정확성, 진실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전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g) 성급 인민위원회, 보건부, 농업·환경부 및 산업통상부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지휘·검사 및 지도를 받는다;

h) 화주의 불만·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국가 검사기관의 과실로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시험에 대한 모든 수수료 및 사용료를

환급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있는 경우)를 배상하여야 한다;

i)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고, 권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관 중인 서류를 제시한다;

k)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4 호 서식에 따라 6 개월마다 해당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주무 부처의 요구에 따라 수시 보고를 실시한다;

l) 원조(지원) 목적의 수입 제품에 대하여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식품 시험·검사 기관을 선정하며, 해당 목적의 수입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검사한다;

m)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물품의 실제 상태 점검은 국가 검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 검사기관이 선정하여 지정된 식품 시험·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료 채취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식품 시료 채취에 관한 교육·연수를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정밀검사: 서류를 검사하고, 물품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며, 공표 서류에 따른 품질·식품안전 기준 및 본 시행령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경고가 있는 기타 항목(있는 경우)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2. 일반검사: 서류를 검사하고, 물품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며, 공표 서류에 포함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군 중에서 선택된 기준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국가 검사기관은 품목의 구성 성분의 특성, 품질 이력, 운송 및 보관 과정,

화주의 수입 이력, 품목의 원산지, 해당 품목에 적용 중인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근거로 하여, 공표 서류에 포함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군 중에서 시험·검사 기준을 선정한다.

3. 간이검사: 수입 품목에 대하여 서류검사만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2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의 적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검사를 적용한다:

a)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식품안전 검사에 관한 상호 인정 국제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권한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출국의 권한기관이 해당 수입 로트 또는 품목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베트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b) 국가 검사기관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에서 간이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 적용한다는 통지를 발급한 경우;

해당 품목은 국가 검사기관이 일반검사에서 간이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 적용한다는 통지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간이검사를 적용받는다(본 조 제 1항 제 a 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검사는 본 조 제 1항 및 제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적용한다:

a) 이전 검사에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점검·감사단으로부터 품질 또는 식품안전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받은 경우(해당되는 경우);

c)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해외의 권한기관이나 제조업체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경보가 있는 경우.

## 제 23 조.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 전환

1. 12 개월 이내에 연속 3 회 수입된 동일 품목이 일반검사 방식으로 수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확인 결과 통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검사 방식을 적용함. 간이검사의 적용 기간은 연속 3 회 중 마지막 수입 건에 대하여 수입 요건 충족 확인 결과 통지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대 12 개월로 함. 간이검사 적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입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 방식을 다시 적용한다. (본 시행령 제 22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수입 품목에 대한 일반검사 방식과 간이검사 방식 간의 전환 적용은 상기 원칙에 따라 순환적으로 시행한다.

2. 12 개월 이내에 연속 3 회 정밀검사 방식으로 수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확인 결과 통지를 발급받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 검사기관이 검사 방식 전환 통지를 서명·발급한 날부터 일반검사 방식을 적용한다 (관할 국가 행정관리기관이 정밀검사 적용 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 24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등록 서류

1. 간이검사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5 호 서식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등록 신청서;
- b) 적합성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합성 공표 서류; 적용 기준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용 기준 공표 서류;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공표서 등록 서류(제품 공표서 등록 접수 확인서, 제품 공표서, 표시(라벨), 제품 표준서); 적합성 공표, 적용 기준 공표 및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 표준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 조직·개인은 해당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본 시행령 제 23 조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검사기관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에서 간이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 적용한다는 통지서 (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d)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사본;

d) 본 시행령 제 10 조에 규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권한기관이 발급한 식품안전 관련 규정 충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다만, 외국 어선이 해상에서 직접 어획·가공하여 베트남에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함.

2. 일반검사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5 호 서식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등록 신청서;

b) 적합성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합성 공표 서류; 적용 기준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용 기준 공표 서류;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공표서 등록 서류(제품 공표서 등록 접수 확인서, 제품 공표서, 표시(라벨), 제품 표준서); 적합성 공표, 적용 기준 공표 및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표준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 조직·개인은 해당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본 시행령 제 2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검사 방식 전환 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국가 검사기관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밀검사에서 일반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 적용한다는 통지서(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d)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사본

d) 본 시행령 제 10 조에 규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권한기관이 발급한 식품안전 관련 규정 충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다만, 외국 어선이 해상에서 직접 어획·가공하여 베트남에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함.

3. 정밀검사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5 호 서식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등록 신청서;

b) 적합성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합성 공표 서류; 적용 기준 공표 대상 제품의 경우 적용 기준 공표 서류;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공표서 등록 서류(제품 공표서 등록 접수 확인서, 제품 공표서, 표시(라벨), 제품 표준서); 적합성 공표, 적용 기준 공표 및 제품 공표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표준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 조직·개인은 해당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c)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사본;

d) 본 시행령 제 10 조에 규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권한기관이 발급한 식품안전 관련 규정 충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개인이 확인 날인한 사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 다만, 외국 어선이 해상에서 직접 어획·가공하여 베트남에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 25 조.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절차

1.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절차:

a)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에 화주는 본 시행령 제 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검사기관에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식은 온라인(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부급·성급 행정절차 정보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중 하나로 한다;

b) 국가 검사기관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라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통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가 검사기관은 화주가 제출한 각 보완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서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c) 서류 검토의 내용은 제출된 전체 서류에 기재된 수입 품목 관련 정보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d) 화주는 물품 통관의 근거로서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른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확인 결과 통지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통지가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조회하여 통관의 근거로 한다.

## 2. 일반검사 실시 절차:

a)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에 화주는 본 시행령 제 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검사기관에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식은 온라인(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부급·성급 행정절차 정보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중 하나로 한다;

b) 국가 검사기관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본 조 제 1 항 제 c 호에 따른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제품 분류, 위험 수준 및 공표 서류를 근거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을 확정하며, 식품안전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식품 시험·검사 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가 검사기관은 화주가 제출한 각 보완 신청 건에 대하여 1 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c) 화물이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본 항 제 b 호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은 시료 채취 및 물품의 실제 상태 검사를 완료하고, 국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위한 검사·시험 결과서를 국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d) 국가 검사기관은 검사·시험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라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통지를 검토·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d) 화주는 물품 통관의 근거로서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른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확인 통지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해당 통지가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조회하여 통관의 근거로 삼는다

### 3. 정밀검사 실시 절차:

a)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에 화주는 본 시행령 제 24 조 제 3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검사기관에 검사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식은 온라인(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부급·성급 행정절차 정보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중 하나로 한다;

b) 국가 검사기관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본 조 제 1 항 제 c 호에 따른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제품 분류, 위험 수준 및 공표 서류를 근거로 품질 및 식품안전 기준을 확정하며, 식품안전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식품 시험·검사 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가 검사기관은 화주가 제출한 각 보완 신청 건에 대하여 1 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c) 화물이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9 영업일 이내에, 본 항 제 b 호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은 시료 채취 및 물품의 실제 상태 검사를 완료하고, 국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위한 검사·시험 결과서를 국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d) 국가 검사기관은 검사·시험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라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통지를 검토·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d) 화주는 물품 통관의 근거로서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2 호 서식에 따른 수입 요건 충족 또는 미충족 확인 통지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통지가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조회하여 통관의 근거로 삼는다.

4. 화주가 본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검사 등록 서류 제출 업무를 조직·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위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 등록 서류에 위임장(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확인 결과 통지가 발급된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검사기관이 식품안전법 제 5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수입 부적합 품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성급 인민위원회 및 주무 전문 관리 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수입 품목이 국가 식품안전 검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역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환경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국가 식품안전 검사와 검역을 동시에 수행한다.

### **제 26 조.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의 처리**

1. 국가 검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후, 화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가 검사기관 및 공표 서류 접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a) 재수출 방식이 적용된 경우에는 재수출 관련 증빙 서류;

b) 권한기관의 확인을 받은 폐기 확인서;

c) 화주와 구매자 또는 양수인 간에 체결된 용도 전환 계약서. 이 경우,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품목의 구매자 또는 양수인은 해당 품목을 식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품질·식품안전과 무관한 부적합 표시사항 또는 기타 사유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하자 시정이 완료된 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주는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록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정 조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이 여전히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 55 조 제 3 항 제 c 호 및 제 d 호에 규정된 처리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 27 조. 화주 및 원조(지원) 수령 조직·개인의 권리와 의무

화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시행령 제 21 조에 규정된 각 경우 중 하나에 따라 수입 품목에 대한 검사 방식의 적용을 국가 검사기관에 요청할 권리.
2. 본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품목에 대한 검사 방식의 전환을 국가 검사기관에 요청할 권리. 요청 서식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6 호 서식에 따른다.
3. 수입 품목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국가 검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 재검사 결과가 최초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경우에는 화주가 재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가 수입 식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검사 비용을 환급받는다.
4.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 식품안전법 제 55 조 제 3 항에 규정된 처리 조치의 적용을 제안할 권리.
5. 시료 채취를 위하여 화물의 원상 상태 및 품목의 완전성을 보장할 의무.
6. 검사 등록 서류의 적법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
7.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가 검사기관의 품목 처리 결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
8. 원조(지원)를 수령하는 조직·개인은 수입 식품안전 국가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료 채취, 표시 사항의 검사 및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시험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원조(지원) 수령 조직·개인은 국가 검사기관으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및 표시 사항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만 해당 화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제품 라벨에 기재된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안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원조(지원) 물품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 28 조.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국가·지역 및 생산·영업 시설의 등록 절차와 수출국에서의 국가 식품안전 검사

1. 베트남의 권한 있는 국가 행정관리기관은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보하며, 수출국의 권한기관과 협력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통제 시스템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생산·영업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a) 수출국의 권한기관은 다음의 서류로 구성된 등록 신청 서류 1부를 농업·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7 호 서식에 따라 국가·지역의 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 (법령 체계, 기준, 식품안전 관리 조직 체계 포함) 및 해당 수출 국가·지역의 권한기관의 식품안전 관리·통제 역량에 관한 정보;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8 호 서식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등록한 동물성 식품 및 수산물 생산·영업 시설 목록; 그리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제 09 호 서식에 따라 해당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요약 정보;

b) 수출국의 권한기관으로부터 본 항 제 a 호에 규정된 생산·영업 시설 목록 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주무 관리 부처의 권한기관은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를 수출국의 권한기관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출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 계획을 함께 통보한다;

c) 수출국에서의 검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식품안전 관리·통제에 관한 법령 체계,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통제 기관의 역량, 그리고 베트남으로 수출을 등록한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

2. 검사 결과의 처리 및 베트남으로 수출이 허용된 국가·지역 및 생산·영업 시설 목록의 공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출국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허용된 국가·지역의 명칭을 공표함. 다만, 육상 동물성 제품 및 수산 동물성 제품의 경우에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허용된 생산·영업 시설 목록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b) 수출국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수출국에서의 검사 종료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공표함.

검사 결과가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환경부는 베트남으로의 식품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c) 육상 동물성 제품 또는 수산 동물성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생산·영업 시설 목록의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권한기관은 본 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록 I 제 08 호 및 제 09 호 서식에 따른 시설 목록 및 시설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농업·환경부에 제출하여 서류 심사 또는 수출국 현지 실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농업·환경부는 해당 시설의 목록 추가 여부를 검토·결정한다.

## 제 29 조. 수출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보건부 장관, 농업·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 41 조, 제 42 조, 제 62 조, 제 63 조 및 제 64 조에 따라 각 부처에 배정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수출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의 권한, 서류, 절차 및 수속을 규정한다.

## 제 30 조.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검사

### 1. 계획에 따른 검사:

권한기관은 매년 위험 수준과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안전 규정 준수 이력을 근거로 하여,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검사 내용 및 검사 빈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포하고, 해당 계획을 조직적으로 시행한다.

2.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a) 식품 제품에 관한 관리 요구 또는 권한기관·조직·개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 b) 식품의 생산·영업 활동에 관한 조건 위반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및 식품안전에 관한 집중 점검 기간에 실시하는 경우;
- c)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d) 국내외 조직·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식품안전 위반 징후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가 있는 경우;
- d)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식품안전 관련 규정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보 또는 경고가 있는 경우;
- e)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품질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식품 제품의 표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표된 적용 기준 또는 해당 기술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품질 징후가 발견된 경우.

3. 검사 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a) 제품이 기술규격, 공표된 적용 기준, 표시(라벨) 및 첨부 서류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검사;
- b) 규정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 및 이력 추적에 대한 검사;
- c) 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의 검사;
- d) 검사 과정에서 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 d) 전자상거래 활동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본 항 제 a 호, 제 b 호, 제 c 호 및 제 d 호에 따른 검사 외에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표된 전자정보 페이지상의 정보가 디지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로 검사되는 제품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대조하여 확인한다.

## 제 6 장

# 식품 표시

### 제 31 조. 표시의무 사항

1.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상품 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a) 의료용 영양식품에는 “의료용 영양식품” 및 “의료인의 감독 하에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 b) 특수용도 식품에는 일반 식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라벨의 주표시면에 “영양 제품(특정 대상자용)” 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2. 수입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책임 조직·개인의 명칭에는 제조 조직·개인의 명칭 및 주소와 제품을 공표한 조직·개인의 명칭 및 주소를 함께 표시한다.

### 제 32 조. 일부 표시의무 사항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보조 라벨 표시를 면제한다: 개인 소비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면세 한도 내의 선물·증여품; 외교 특권·면제를 받는 자의 수입 제품; 통과·중계무역·임시수입·재수출·보세창고 반입 제품; 시험 또는 연구용 견본; 박람회·전시용 견본; 수출용 제품의 생산·가공 또는 조직·개인의 내부 생산에만 사용하고 국내 시장에서 유통하지 아니하는 제품 및 원재료.
2. 향신료 및 허브를 제외하고, 최대 표시면적이 10cm<sup>2</sup> 미만인 소형 포장에 대하여는 보조 라벨 또는 외부 포장에 해당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구성 성분, 유통기한, 보관 방법 및 사용 방법의 표시를 면제한다.
3.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에 대하여는 제조일자의 표시를 면제한다.

## 제 7 장

# 식품 광고

### 제 33 조. 광고 전에 내용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식품

1. 건강보호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용도 식품 및 보충식품(단, 비타민 및 무기질만을 함유하고 건강 관련 표시·권고(Health claims)를 하지 아니하는 보충식품은 제외한다).
2. 36 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품(단, 「광고법」 제 7 조에 규정된 24 개월 미만 영아용 모유대체식품 및 6 개월 미만 영아용 보충영양식품은 제외한다).

### 제 34 조.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식품 광고 내용의 등록은 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광고 전에 제품을 보유한 조직·개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제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을 발급한 기관에 광고 내용 등록을 한다.
2. 광고 내용은 제품 공표서에 기재된 기능·대상·경고·권고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건강보호식품의 경우:
  - a) “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 b) 영상·음성을 사용하는 광고의 경우 본 항 제 a 호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명확히 낭독한다;
  - c) 15 초 미만의 짧은 영상 광고의 경우 “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를 낭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광고 화면에 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4.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별표 제 10 호 서식에 따른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 b) 영상·음성을 사용하는 광고의 경우 예정 광고 대본(조직·개인이 확인한 것) 및 영상·음성 기록본에 기재된 예정 광고 내용; 기타 매체 광고의 경우 예정 광고 시안(조직·개인이 확인한 것).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이 있는 조직·개인이 다른 조직·개인에게 광고 내용 확인서 명의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가 확인한 것)을 제출한다.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한다. 영어 자료의 경우 조직·개인이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자의 서명을 공증한다. 베트남어로의 번역 및 공증이 불가능한 경우, 조직·개인은 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번역자의 서명을 공증받은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하며 번역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제출 서류는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시점에 유효하여야 한다.

#### 5. 광고 내용 확인서 발급 절차:

- a) 광고 제품을 보유한 조직·개인은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서류를 온라인 방식(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 또는 부급·성급 행정절차 정보시스템)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b) 접수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별표 제 11 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다. 이 기간은 서류가 우편으로 송부되거나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 도장이 날인된 날부터,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완비된 서류가 시스템에 접수된 날부터 산정한다.

조직·개인의 광고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수정·보완 요구의 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한다.

조직·개인은 수정·보완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수정·보완은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수정·보완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접수기관 역시 각 서류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수정·보완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접수기관은 서류 심사 후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서면으로 회신한다;

c) 광고 내용 확인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한 조직·개인의 명칭 및 광고 확인 내용을 접수기관의 전자정보페이지 및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한다;

d) 광고 내용 확인을 신청한 조직·개인은 접수기관에 서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6. 광고 제품을 보유한 조직·개인 및 광고를 게시하는 조직·개인은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확인된 내용대로만 광고한다.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정보페이지, 사회관계망,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연결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고 내용 확인 등록 대상 식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영업·광고하는 경우, 조직·개인은 권한기관이 확인한 광고 내용과 함께 광고 내용 확인서를 공개한다.

7. 다음 각 호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없다:

a) 제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이 회수된 경우;

b) 권한기관의 결정에 따라 제품의 유통이 정지된 기간 중인 경우.

## 제 8 장

#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

### 제 35 조.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및 검증시험·검사기관의 조건

1.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적합성 평가 서비스 영업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 활동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등록 분야에는 지정 신청 범위에 적합한 시험 분야 또는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가 공표한 시험·검사 항목 목록에 속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식품 시험 및 검사 분야에서 ISO/IEC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c) 시험·검사 요구 사항 및 지정 등록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d) 지정 등록 분야에 적합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기술 인력인 시험원 또는 검사원을 최소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e) 시험·검사 방법은 최신화되고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정 등록을 신청한 항목에 대한 검사 역량은 관련 부처의 규정 및 관련 기술 규격 또는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해당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실험실 간 비교를 실시할 수 없는 시험·검사 방법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방법에 대한 완전한 문서, 시험·검사 방법의 사용 적합성 검증 보고서 및 표준물질, 표준균주 또는 표준재료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검증시험·검사기관은 관련 부처 장관(산업통상부 제외)이 공표한 적격 검증시험·검사기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국립 시험·검사기관일 것;
- b)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받았을 것.

「식품안전법」 제 47 조 제 1 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 권한기관은 적격 검증시험·검사기관 목록에 속한 기관 중에서 검증시험·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 제 36 조.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서류

1. 지정 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6 호 서식에 따른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b) 지정 신청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의 절차서, 사용 적합성 검증 보고서, 시료 접수 및 검사 결과 통보 절차서 (사본);
- c) 역량 자료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7 호 서식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역량 보고서; 시험·검사 품질 보증 증빙 서류 (사본): 지정 신청 항목에 대하여 숙련도 시험 결과 또는 실험실 간 비교 시험 결과; 숙련도 시험 운영 기관이 없거나 실험실 간 비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검사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표준균주 또는 표준재료 관련 서류; 시험원 및 검사원의 숙련도 평가 결과 보고서.

2. 지정 범위 변경·추가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6 호 서식에 따른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범위 변경·추가 신청서;
- b) 변경·추가 신청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의 절차서, 사용 적합성 검증 보고서, 시료 접수 및 검사 결과 통보 절차서 (사본);
- c) 역량 자료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7 호 서식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역량 보고서; 변경·추가 지정 범위에 대한 시험·검사 품질

보증 증빙 서류 (사본): 변경·추가 신청 항목에 대하여 숙련도 시험 결과 또는 실험실 간 비교 시험 결과; 숙련도 시험 운영 기관이 없거나 실험실 간 비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검사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표준균주 또는 표준재료 관련 서류; 시험원 및 검사원의 숙련도 평가 결과 보고서.

### 3.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연장 신청 범위가 이미 발급된 결정서의 지정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 a)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6 호 서식에 따른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b)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8 호 서식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내 시험·검사기관 활동 결과 보고서.

## 제 37 조. 지정 절차

1. 시험·검사기관은 지정 신청 서류 1부를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시험·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소재지의 성급 인민위원회 소관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이하 “지정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은 지정 결정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시행령 제 36 조에 따른 지정 기관의 서류 검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지정 신청 항목이 20 개 이하인 서류의 경우: 10 일 이내;
- b) 지정 신청 항목이 21 개에서 50 개 이하인 서류의 경우: 20 일 이내;
- c) 지정 신청 항목이 50 개를 초과하는 서류의 경우: 30 일 이내.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기관은 시험·검사기관에 서면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 요청은 1 회에 한한다. 시험·검사기관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서면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의 서류 보완은 1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보완

기한이 경과하면 시험·검사기관의 서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지정 기관은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서류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 지정 기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서류 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지정 기관은 최대 20일 이내에 평가단 구성 결정을 내리고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질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단은 신청한 지정 범위에 근거하여 식품 시험·검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5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평가단 구성 결정서에는 평가 범위, 평가 내용, 명단 및 각 위원의 역할 분담을 명시해야 하며, 현장 실질 평가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본 시행령 제 35 조의 요건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준수 여부;
- b) 지정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시험·검사기관 평가 회의록은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9 호 서식에 따른다.

4. 시험·검사기관 평가 회의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a) 시험·검사기관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난 경우, 지정 기관은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결정서를 발급한다;
- b) 시험·검사기관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난 경우, 지정 기관은 지정을 거부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한다;
- c) 평가 회의록에 시험·검사기관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포함된 경우, 시험·검사기관은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20 호 서식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를 지정 기관에 제출한다.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기관은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결정서를 발급한다.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 기관은 시험·검사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지정 기관은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21 호 서식에 따른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결정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정 결정서의 유효 기간은 서명 및 발행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 제 38 조.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시험·검사 및 검증시험·검사의 위탁

1. 국가관리 업무를 위하여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시험·검사 항목에 대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요구가 발생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관련 부처는 이미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국가관리 요구를 충족하도록 시험·검사를 수행하게 한다.
2. 검증시험·검사 요구가 발생하였으나 적격 검증시험·검사기관 목록에 포함된 검증시험·검사기관이 요구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분쟁 해결 기관은 관련 부처(산업통상부 제외)에 제안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고 검증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 39 조. 시험·검사기관 식별 코드 부여

지정 기관은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에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식별 코드 기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성급 인민위원회 기호)-KNTP-관리 분야별 분류 기호 (해당 시)

### 제 40 조. 지정 기관 및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책임

1. 지정 기관의 책임:
  - a)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최초 지정, 지정 유효기간 연장, 지정 범위 변경·추가 신청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및 지정을 실시한다;
  - b)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을

점검한다;

c) 평가, 지정, 점검 및 감사 활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d) 시험·검사기관 및 검증 시험·검사기관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한다;

d) 지정 결정의 발급, 정지, 복원, 취소 및 일부 또는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다.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이 요구에 따른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정기관은 지정 결정의 복원을 검토한다;

e) 지정, 정지, 복원, 취소 또는 효력 정지된 시험·검사기관의 목록을 해당 지정·정지·복원·취소·효력 정지 범위와 함께 공표한다;

g)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과 관련된 민원 및 고발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h)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i) 수수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평가 및 지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한다.

2.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책임:

a) 검사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b) 지정 유효 기간 동안 시험 분야 활동 등록 증명서 및 ISO/IEC 17025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실험실 역량 인정 결정서/인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c) ISO/IEC 17025 표준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 범위와 관련된 절차를 유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d) 인정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의 변경 사항 또는 지정 범위의 축소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정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d) 인정 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참여 결과 및 실험실 간 비교 시험 결과를 지정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검사기관이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e) 지정 기관에 정기 보고, 수시 보고 또는 특정 주제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 활동 결과 정기 보고서는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18호 서식에 따른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시 보고 또는 특정 주제 보고: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 g) 상기 규정 외에도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수수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심사 수수료 납부; 검사 결과의 성실성, 객관성 및 정확성 보장; 검사 결과서에는 본 시행령 별표 I의 제 22호 서식에 따른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활동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 h) ‘표준 및 기술규격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관의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제 41 조. 지정 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 효력 상실 경우**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정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효력 상실을 통지한다:

1. 권한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법인 자격이 박탈된 경우 또는 권한기관의 결정에 따라 식품 시험·검사에 관한 기능·임무·권한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국가 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 9 장

# 식품 원산지 추적

### 제 42 조. 안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자신이 생산·영업한 식품이 안전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식품안전법」 제 5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추적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 제 43 조. 식품안전 부적합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실시

1.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원산지 추적을 위하여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및 영업의 전 과정에서 제품, 원재료, 반제품, 투입 원재료 생산·공급시설, 제품 공급·유통·영업 시설 및 계약,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의 고객과 관련 자료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완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원산지 추적을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식품 생산·영업 시설의 생산·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

b) 제품에 관한 정보로서 제품명, 이미지, 브랜드, 상표, 기호·코드, 제품 일련번호, 품목, 수량, 중량, 로트번호, 배치번호, 유통기한, 포장, 첨가물, 적용된 기준·규격, 원재료 및 반제품에 관한 정보, 시험·검사 인증, 제품의 생산·영업 시기 및 장소와 그 밖의 관련 정보;

c) 제품을 공급·유통·영업하는 조직·개인 및 고객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2. 보건부 장관, 농업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은 각각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 원산지 추적의 구체적인 사항 및 적용 로드맵을 규정한다.

## 제10 장

#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책임분담

### 제 44 조. 식품안전 국가관리 책임분담 원칙

1.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보장한다.
2.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의 통일성을 기초로 한다.
3. 식품의 생산 및 영업 전 과정에 걸친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4.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한다.
5. 하나의 제품 및 하나의 생산·영업 시설은 하나의 국가 관리기관의 관리만을 받는다는 단일창구 원칙을 보장한다.
6. 과학성, 완전성 및 실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7.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에서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간의 관리 권한을 분권화한다.
8. 둘 이상의 전문 관리기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제품 중 생산량이 가장 큰 제품을 관리하는 기관을 관할 관리기관으로 한다.
9. 생산 공정을 수행하지 아니하나, 둘 이상의 전문 관리기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영업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의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경매시장을 제외한다.
10. 둘 이상의 전문 관리기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영업하는 시설의 경우, 조직·개인은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전문 관리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제 45 조. 보건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식품안전법 제 6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의 일반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다.

2. 전문 관리 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보고를 감독·종합한 결과를 근거로,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정부에 보고한다.
3. 식품안전법 제 62 조에 따라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및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 에 규정된 제품군에 대하여 국가기술규격을 제정한다. 또한 농업·환경부 및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기술규격(안) 또는 식품안전 한계 기준(안)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후, 국가기술규격 또는 식품안전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 에 규정된 식품 제품에 대하여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영업 및 생산·영업 시설 전 과정에 걸쳐 식품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그 관리 권한을 분권화한다.
5.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및 건강보호식품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회수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접수 및 관리를 조직한다.
6. 분장된 관리 범위에 속하는 검사·검증 수행 식품 시험·검사 기관의 목록을 제정·공표한다.
7.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영업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처리한다.
8.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감독하고 처리한다.
9. 매년 분장된 관리 분야에 대하여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제 46 조. 농업·환경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농업·환경부는 식품안전법 제 63 조 및 본 시행령과 함께 공포된 부록 III 에 따라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및 제품군에 대하여 국가기술규격을 제정·공포한다.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제정·공표한다.

2.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I에 규정된 제품군에 대한 안전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부에 제출하고, 보건부가 이를 제정하도록 한다.
3.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I에 규정된 제품 및 제품군에 대하여, 곡류,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 채소·구근·과일 및 그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원유 (신선 원료유), 벌꿀 및 벌꿀 제품, 유전자변형식품, 소금 및 그 제품을 대상으로 초기 생산 단계 (재배, 사육, 채취, 어획, 채굴) 부터 수거, 도축, 1차 가공,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 분권의 이행을 관리·점검한다.
4.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및 제품군에 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검사기관에 임무를 부여하도록 조직한다.
5. 식품안전법 제 42 조 및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에 대하여 관련 각종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관리 권한을 분권화하고, 그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식품안전법 제 42 조 및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에 대한 관련 각종 인증서 발급 업무에 관한 분권 이행을 관리·점검한다.
6. 분장된 관리 범위에 속하는 검사·검증 수행 식품 시험·검사 기관의 목록을 제정·공표한다.
7.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국가·지역 및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허용된 생산·영업 시설의 목록을 공표한다.
8.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영업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처리한다.
9. 매년 분장된 관리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10.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에 대하여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 및 그 발급 권한의 분권화를 조직한다.

#### 제 47 조. 산업통상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식품안전법 제 64 조 및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V 에 따라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및 제품군에 대하여 국가기술규격을 제정한다.
2.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V 에 규정된 제품군에 대한 안전 한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부에 제출하고, 보건부가 이를 제정하도록 한다.
3. 산업통상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에 대하여 원산지·이력 추적의 이행을 안내하고, 원산지·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V 에 규정된 식품 제품 및 해당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시설에 대하여,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 수입 및 영업 전 과정에 걸쳐 식품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그 관리 권한을 분권화한다.
5. 대형마트, 쇼핑센터, 편의점, 비축·유통 체계에 속하는 시설 및 기타 영업 형태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식품 영업 활동을 점검·감독하여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내용을 삭제한다.
6.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에 대하여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 및 그 발급 권한의 분권화를 조직한다.
7.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포장·용기 재료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위조식품 방지 및 상거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8.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영업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점검·처리한다. 또한 위조상품, 금지상품, 밀수품의 생산·영업, 상거래 부정행위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처리한다.
9. 매년 분장된 관리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제 48 조. 재무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재무부는 식품 분야에서 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1.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2. 기업의 영업 활동 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영업 중단, 일시 중단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전문 관리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식품안전 검사 면제 대상 수입 제품의 물량(로트)에 관한 정보.
5. 전문 관리 부처의 연례 또는 수시 요청에 따라, 수출·수입 제품 물량의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
6. 세관의 국가 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 위반 징후가 발견된 수출·수입 물량에 관한 정보.

#### **제 49 조. 과학기술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보건부, 농업·환경부 및 산업통상부의 제안을 근거로 하여, 식품에 관한 국가표준(TCVN) 제정을 위한 연간 정기 계획을 수립·공표한다.
2. ISO/IEC 17025 표준에 따라 시험실 인가 활동을 등록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점검·감독한다.

#### **제 50 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광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광고 매체 상의 식품 광고 활동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처리한다.
2. 광고 분야의 법규 문서에 규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식품

광고를 차단하고 삭제한다.

### 제 51 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1. 지방 범위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정부에 책임을 진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직할 성·시의 식품위생안전 연합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관할 지역 내 식품안전 보장을 위하여 검사·점검·감독 인력을 능동적으로 조직한다. 또한 하급 국가기관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직접 지휘하고 정기적으로 독려·점검하며, 분장된 관리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민원 및 고발을 해결하고 위법 행위를 처리하며, 관할 지역에서 식품안전 관련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및 법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관할 지역 내에서 정부 및 각 부처·부문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조직하여 시행한다.
3. 중앙 직할 성·시의 식품위생안전 연합 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4. 관할 지역 내에서 식품안전 보장에 관한 법령의 이행을 선전·홍보하고 이를 독려한다. 또한 업종별 협회, 정치·사회 단체, 조직·개인 및 주민의 평가 참여를 장려하고, 관할 지역 내 식품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적시에 반영·신고되도록 한다.
5.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필요한 자원을 배치한다.
6. 관할 지역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분권에 따라 소규모 식품 생산·영업 시설, 길거리 음식, 음식점 및 급식 서비스 시설, 관할 지역 내 시장의 식품안전과 기타 관리 대상에 대하여 식품안전 보장 조건을 관리한다.
7.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를 생산·영업하는 시설, 농림수산물의 생산·영업에 사용되는 물 및 얼음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조건을 관리한다. 또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경매장의 식품안전을 관리한다.

8. 지역 특수 식품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지방 기술규격을 수립·공표한다.

9.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직하고, 분권화하며, 그 이행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a)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용도 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품 및 보충식품(단, 비타민 및 무기질만을 함유하고 건강 관련 표시·권고(Health claims)를 하지 아니하는 보충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서의 신청 서류를 접수·관리하고, 이를 발급·취소한다.

b) 적합성 공표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발급·취소한다(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는 제외한다).

c) 수입국의 요구 및 분장·분권에 따라, 수출 식품에 대하여 자유판매증명서(CFS), 위생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발급·보완·수정·재발급·취소한다.

d) 국가관리용 품질·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 결정에 대하여 발급, 정지, 복원, 취소 또는 일부·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다.

e) 보건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분권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기관의 임무를 부여·정지·회수하고,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조직한다.

10.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감독하고 처리한다.

11. 적합성 공표 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지휘하여, 조직·개인이 공표를 완료한 이후의 서류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공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위반을 처리한다. 또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공표 제품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대한 감시를 위한 시료 채취 예산을 배정한다. 이때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감시 결과를 근거로 생산·영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2. 식품 제품에 대한 시험 활동을 등록한 시험·검사기관 중 등록 시험 활동 인증서가 발급·정지·취소되었거나 위반 처분을 받은 기관의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전문 관리 부처에 제공한다.

13. 가격 신고의 접수 및 허위 신고의 처리, 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신고 가격 정보 갱신을 조직·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가격의 종합·분석·예측 업무에 신고 가격을 활용한다. 또한 가격법 및 정부의 2024년 7월 10일자 제 85/2024/ND-CP 호 시행령(가격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 분장된 관리 대상 식품 제품에 대한 가격 신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14.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 시험·검사 기관,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기관, 식품 제품에 대하여 시험 활동을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의 활동을 점검·감독한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ISO/IEC 17025 표준, 국제식품표준(IFS), 글로벌 식품안전 표준(BRC), 식품안전시스템 인증(FSSC)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등록한 적합성 평가 기관의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점검·감독한다.

15. 매년 분장된 관리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제 52 조.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

1. 각 전문 관리 부처는 자신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관리의 통일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보건부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수립하며,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및 기타 부처·부문은 각자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보건부와 협력하여 해당 식품안전 정보·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3. 보건부, 농업·환경부 및 산업통상부는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하여 점검·감사 프로그램 및 계획을 주관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타 부처·부문은 이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건부는 식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치료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전문 관리 부처는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중독 의심 식품의 원인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부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중독 유발 식품에 대하여 원산지·이력 추적 및 처리 업무를 주관한다.
5. 다른 부처·부문의 분장된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 제품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고 소비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부는 전문 관리 부처와 협력하여 점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론을 도출한다.
6. 취약계층에 속하는 주체의 민사적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기관·조직·개인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취약계층에 속하는 주체의 민사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익을 보호한다.
7.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재무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행정절차의 해결과 식품안전 관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과의 데이터 연계·공유를 완비할 책임이 있다.
8.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각자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품질 및 식품안전 분야의 국가기술규격(QCVN), 지방기술규격(QCDP) 및 국가표준(TCVN)을 검토·갱신하고, 이를 적시에 개정·보완할 책임이 있다.
9. 전자상거래 거래플랫폼의 소유자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제품에 관한 법적 서류를 판매자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검증·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b) 국가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위반 제품을 신속히 삭제한다;

c) 필요한 검증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진다.

10. 식품을 생산·영업하는 조직·개인은 제품에 관한 위험 경보 정보를 갱신할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견된 경우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 11 장

# 시행 규정

### 제 53 조. 시행 규정

1. 본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2018년 2월 2일자 정부의 제 15/2018/ND-CP 호 시행령(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은 본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다음의 규정을 폐지한다.
  - a) 정부의 2016년 7월 1일자 제 77/2016/ND-CP 호 시행령(산업통상부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제 물품 매매, 화학물질, 산업용 폭발물, 비료, 가스 영업 및 식품을 포함한 각종 투자·영업 조건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한 시행령) 제 24b 조 제 1 항으로서, 정부의 2020년 2월 5일자 제 17/2020/ND-CP 호 시행령(산업통상부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투자·영업 조건과 관련된 여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추가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b) 정부의 2018년 11월 12일자 제 155/2018/ND-CP 호 시행령은 보건부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투자·영업 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그 제 3 조 제 1 항은 이를 폐지한다;
  - c)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제 136/2025/ND-CP 호 시행령의 제 29 조는 농업 및 환경 분야의 권한 위임 및 권한 분산에 관하여 규정한다;
  - d)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제 146/2025/ND-CP 호 시행령은 산업 및 무역 분야에서의 분권 및 권한 분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첨부된 부록 XI 중 제 37 조 제 3 항과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제 I, 제 II 및 제 III 목,  
그리고 확인시험 지정 절차에 관한 제 IV, 제 V 및 제 VI 목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d)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제 148/2025/ND-CP 호 시행령은 보건 분야에서의 분권 및 권한 분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제 25 조, 제 28 조 제 1 항, 제 30 조 및 이에 첨부된 부록 V 중 제 1 부, 제 2 부 및 제 12 부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4. 본 시행령에서 인용한 법령이 개정·보완되거나 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보완되거나 대체된 법령을 적용한다.

### 제 54 조. 경과 규정

1. 본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자가 공표를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직·개인이 적합성 공표서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생산·영업 및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조직·개인은 본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공표서 등록을 완료할 책임이 있다.

2.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용도 식품, 보충식품 및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생산·영업 활동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서 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인증, 국제식품표준(IFSS), 글로벌 식품안전 표준(BRC),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 또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제출된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록 서류, 지정 범위 변경·보완 등록 서류 및 지정 갱신 등록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가 제출된 시점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처리한다. 단, 조직·개인이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본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국가관리 업무를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결정 및 검사·검증 수행이 가능한 적격 식품 시험·검사기관 목록을 공포한 결정은, 해당 결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본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주무 관리 부처가 발급한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기관 지정 또는 위임 결정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유효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ISO 22000, 국제식품표준(IFS), 글로벌 식품안전 표준(BRC), 식품안전시스템 인증(FSSC 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은, 본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유효한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생산 시설은 제외한다.

### 제 55 조. 시행 책임

각 부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 정부 소속 기관의 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조직·개인은 본 시행령의 시행에 책임을 진다.

#### 수신처:

- 당 중앙위원회 비서처;
- 총리 및 각 부총리;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소속 기관;
- 성·중앙직할시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 당 중앙사무처 및 당의 각 당위원회;
- 당 사무총장실;
- 국가주석실;
-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 국회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 정치·사회단체 중앙기관;
- 정부 사무처: 장관, 위원장, 차관보, 총리 보좌관,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Lê Thành Long

전자정보포털 총책임자, 각 국·과 및 소속 기관,

관보;

- 보관: 문서보관과, 과학교육·문화사회과(2부).

## 부록I

(2026년 1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제46/2026/ND-CP호에 첨부)

제01호 서식	적합성 공표서
제02호 서식	수입 식품 적합/부적합 확인 결과 통지서
제03호 서식	검사 방식 전환 통지서
제04호 서식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실시 보고서
제05호 서식	수입 식품 검사 등록 신청서
제 06 호 서식	검사 방식 전환 요청 공문
제 07 호 서식	수출국 관할 기관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통제 역량에 관한 정보
제 08 호 서식	베트남 수출 등록 식품 생산·영업 시설 목록 서식
제 09 호 서식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정보 요약서
제 10 호 서식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제 11 호 서식	광고 내용 확인서
제 12 호 서식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제 13 호 서식	심사·평가 회의록
제 14 호 서식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제 15 호 서식	건강보호식품 생산 활동 보고서
제 16 호 서식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지정 범위 변 경·추가/지정 갱신 신청서
제 17 호 서식	시험·검사기관 역량 보고서
제 18 호 서식	시험·검사기관 활동 결과 보고서

제 19 호 서식	시험·검사기관 평가 조서
제 20 호 서식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
제 21 호 서식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결정서
제 22 호 서식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검사 결과서
제 23 호 서식	시설 식품안전 조건 심사조서
제 24 호 서식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베트남주의 사회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적합성 공표서

번호: ...../ 기업명 / 공표연도

I. 적합성 공표를 수행하는 조직·개인에 관한 정보

조직·개인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번호: ..... 발급일/ 발급기관:  
.....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II. 적합성 공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

2. 성분: .....

3. 제품의 품질 기준 및 안전 기준<sup>1</sup>: .....

4. 제품의 유통기한 (라벨에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함):  
.....

5. 포장 규격 및 포장재 재질: .....

6. 제품 제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

III. 제품 라벨 견본 (제품 라벨 견본 또는 예정된 제품 라벨 견본을 첨부)

IV. 품질 및 식품안전 요구 사항

식품안전 요구 사항 충족에 대한 공표 근거: .....<sup>2</sup>

본인은/본 기관은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의 모든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공표한 제품에 대하여 공표 서류의 법적 유효성 및 제품의 품질·식품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년 ...월 ...일

조직·개인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

<sup>1</sup>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 결과서에서 인증된 각 항목을 기재한다.

<sup>2</sup>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 결과서의 번호/기호, 발급일 및 발급기관을 기재한다.

국가 검사기관

베트남주의 사회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수입 식품 적합/부적합 확인 결과 통지서

번호: ..../20...../TBNK

1. 화주(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2. 화주로부터 검사 등록을 위임받은 조직·개인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해당되는 경우): .....
3. 수출 업체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4. 통관 신고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5. 출발 세관(출항/출국 세관): .....
6. 도착 세관(도착/입국 세관): .....
7. 검사 기간: .....
8. 검사장소: .....
9. 물량 세부 정보:

No.	상품명	제품군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검사방식	적합/부적 합 확인	부적합 사유	부적합 상품에 대한 처리 조치
(1)	(2)	(3)	(4)	(5)	(6)	(7)	(8)

수신처:

..., ...년 ...월 ...일

- 화주: .....
- 출입국 세관: .....
- 보관: .....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국가 검사 기관

베트남 주의사회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TB-(기관 기호)

....., ...년 ...월 ...일

**검사방식 전환 통지서**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그 시행을 조직·지도하기 위한 정부의 .....년 .....월 .....일자 제...../20.../ND-CP호 시행령 제.....조 규정에 근거하고, 국가 식품안전 검사 방식 전환에 관하여 .....년 .....월 .....일자 .....호 문서로 제출된 (통지를 받는 화주의 명칭)의 요청에 따라, (국가 검사 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국가 식품안전 검사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통지한다.

**1. 검사 방식 전환을 요청하는 품목에 관한 정보:**

No.	상품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업체 제품표준에 따름)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기존 적용된 검사 방식
(1)	(2)	(3)	(4)	(5)

**2. 검사 방식 전환이 적용되는 품목에 관한 정보:**

No.	상품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업체 제품표준에 따름)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전환된 검사 방식	변경사유*	적용시간 **
(1)	(2)	(3)	(4)	(5)	(6)	(7)

\* 전환 사유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해당 품목이 12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수입되어 일반 검사방식에 따라 수입 적합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 적용 기간을 명시한다. 즉, .....년 .....월 .....일부터(적용 개시일) .....년 .....월 .....일까지(적용 종료일)로 한다.

### 3. 검사 방식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관한 정보

No.	상품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업체 제품표준에 따름)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전환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
(1)	(2)	(3)	(4)	(5)

\* 검사방식 전환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4. 기타 사항(있는 경우)

(국가 검사기관의 명칭)은(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며, 검사 방식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주의 명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상

수신처:

- 화주: .....
- 출입국 세관: .....
- 보관: .....

....., ...년 ...월 ...일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국가 검사 기관

베트남 주의사회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보고서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실시 현황에 관한 보고

기간: ...../...../.....부터 ...../...../.....까지

검사 기관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I. 진행 내용

A. 일반사항:

No.	내용	간이검사			일반검사			정밀검사		
		적합 (a)	부적합 (b)	합계 (a+b)	적합 (a)	부적합 (b)	합계 (a+b)	적합 (a)	부적합 (b)	합계 (a+b)
1	제품군별 총 품목 수 (예: 단일성분 식 품첨가물)									
2	물량(로트) 검사 평균 소요 시간 (시간)									

B.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량·품목 통계표

No.	화주의 명칭 및 주소	품목명	제품군	제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검사방식	부적합 사유	처리방 안

II. 건의사항:

국가 검사 기관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수입 식품 검사 등록 신청서

번호: ...../20.../DKNK

1. 화주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2. 화주로부터 검사 등록을 위임받은 조직·개인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해당되는 경우): .....
3. 수출 업체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4. 물품의 예상 입항(도착) 시기: .....
5. 출발세관: .....
6. 도착세관: .....
7. 검사기관: .....
8. 검사장소: .....
9. 예정 국가 검사 기관의 명칭: .....
10. 해당 로트의 품목 세부 정보:

No.	품목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 시설의 제품 표준에 따름)	제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검사방식	검사방식 전환 통지 (있는 경우)*
(1)	(2)	(3)	(4)	(5)	(6)

\* 검사 방식 전환이 적용되는 수입 품목에 대하여, 전환 통지서의 번호, 발행일 및 통지를 발급한 국가 검사 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1. 통관 신고서 번호(해당하는 경우): .....

....., ...년 ...월 ...일

화주의 법정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 ...년 ...월 ...일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화주 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 ...년 ...월 ...일

수신: (식품안전 국가검사기관 명칭) 검사 방법 전환에 관하여 정부의 ...년 ...월 ...일자 제.../20.../ND-CP호 시행령 제...조에 근거하여 식품 안전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과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 당사 물품에 대하여 검사 방법 전환 통지 발급을 (식품안전 국가검사기관 명칭)에 요청한다:

1. 화주의 명칭 및 주소: .....

2. 해당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No.	품목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 시설의 제품 표준에 따름)	제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적용된 검사 방법	수입 요건 적합 식품 확인 결과 통보서*
(1)	(2)	(3)	(4)	(5)	(6)

\* 통보서 번호, 발행일(서명일) 및 통보서를 발급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 통보서가 국가단일창구정보포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요건 적합 식품 확인 결과 통보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국가 식품안전 검사방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No.	품목명	제품군 (QCVN 또는 Codex 또는 제조 시설의 제품 표준에 따름)	제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전환될 검사 방식	전환 사유*
(1)	(2)	(3)	(4)	(5)	(6)

\* 전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해당 물품은 12개월 이내에 연속 3회 수입되었으며, 각 수입 건마다 일반검사 방식에 따라 수입 요건에 적합하다는 식품수입 적합 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

4. 기타 사항 (해당되는 경우):

(화주 명칭)은 (식품안전 국가검사기관 명칭)에 검사방식 전환 통지 발급을 요청한다.

수신처:

- 화주: .....
- 출입국 세관: .....
- 보관: .....

....., ...년 ...월 ...일

국가 검사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수출국 권한기관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및 통제 역량에 관한 정보

1. 조직 체계 및 관리 기구:

.....  
.....

2. 업무 수행 인력(인원수, 자격 수준, 기술 관련 교육·훈련 이수 현황...):

.....  
.....

3. 식품안전 관리 및 인증에 관한 법령 체계, 기준 및 통제 절차:

.....  
.....

4. 생산·영업 시설에 대한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검사·감시 체계:

.....  
.....

5. 식품안전 검사·감시 프로그램:

....., ...년 ...월 ...일

수출국 식품안전 권한 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생산·영업 시설의 식품안전 보장 조건에 관한 정보 요약서

1. 생산·영업 시설 명칭: .....
2. 주소: .....
3. 제품: .....
4.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
5. 적용 중인 품질관리 시스템:

....., ...년 ...월 ...일

수출국 식품안전 권한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기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기관명

.....<sup>1</sup>....., ...년 ...월 ...일

신청서

광고 내용 확인 신청서

수신: <sup>2</sup> .....

1. 확인 신청 기관명: .....

2. 본사 주소:<sup>3</sup>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다음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을 신청한다:

No.	제품명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의 번호 및 기호	제품 공표 등록 접수일

제출 서류 및 자료: .....

본인은 상기 기재한 정보 및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보증하며, 광고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는 확인된 내용에 따라 식품 제품 광고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귀 기관에서 검토 후 광고 내용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기관의 장 또는 적법한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_\_\_\_\_

- 1 지명.
- 2 서류 접수기관: 본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권한 기관.
- 3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기재한다.

상급 기관 명칭  
광고 내용 등록 접수 기관 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XNQC-...<sup>1</sup>...

....., ...년 ...월 ...일

### 광고 내용 확인서

조직·개인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No.	제품명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의 번호 및 기호

첨부된 광고 내용은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한다.

해당 조직·개인은 확인된 내용에 따라 광고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확인기관

(서명 및 직인 날인)

<sup>1</sup> 확인 기관 명칭의 약칭 기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신청서

건강보호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충족 시설 인증서 발급

수신: .....

조직·개인의 명칭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

다음 제품 형태에 대하여 건강보호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식품안전  
충족 시설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다:

....., 년...년 ...월 ...일

조직·개인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상급 기관 명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권한 기관 명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년 ...월 ...일

### 심사 회의록

####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용 시설의 식품안전 조건 심사

.....의 .....년 .....월 .....일자 제.....호 결정에 따라,

금일 .....년 .....월 .....일, 심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단장(성명, 직위, 기관/단위): .....
2. 서기(성명, 직위, 기관/단위): .....
3. 위원(성명, 직위, 기관/단위): .....

상기 심사단은 .....에서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조건을 심사하였다.

조직·개인 대표: .....

#### 일반 정보

##### 1. 인증서 발급 신청 시설에 관한 정보:

- 생산 시설의 명칭 및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정 대표자: .....

##### 2. 심사에 관한 정보:

- 심사 기간: .....
- 최근 심사 일자: .....
- 심사 방법: .....년 .....월 .....일자 ...../TT-BYT호 시행규칙에 부속된 GMP 원칙 및 규정을 기준으로, 보고 청취, 현장 확인 및 서류 대조를 통하여 준수 수준을

평가한다.

- 심사 범위: .....년 .....월 .....일자 (시설명)의 신청 서류에 따른다.

## 심사결과

### I. 현장확인사항

1. 품질관리
2. 인사관리
3. 생산시설 및 설비
4. 위생관리
5. 문서 및 기록관리
6. 생산관리
7. 품질통제
8. 위탁 생산 및 위탁시험
9. 불만 접수 및 제품 회수
10. 자체 점검

### II. 미비 사항

### III. 결론

### IV. 심사 대상 시설의 의견

본 회의록은 관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한다. 심사 대상 시설이 1부를 보관하고, 심사단이 1부를 보관하며, 권한 기관이 1부를 보관한다.

심사단  
(서명 및 직인 날인)

조직·개인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1. 단장:
2. 서기:
3. 위원:

상급기관 명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권한기관 명칭

독립 - 자유 - 행복

-----

-----

번호: .....

**인증서**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인증**

시설 명칭

주소

**건강보호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적합**

다음 제품 형태에 대하여:

.....

본 인증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년 ...월 ...일

**발급기관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

생산시설 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 ...년 ...월 ...일

보고서

건강보호식품 생산 활동 보고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 1 차 보고 기간(발급일로부터 최초 12 개월)

제 2 차 보고 기간(이후 12 개월)

제 3 차 보고 기간(이후 12 개월)

1. 건강보호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인증서 번호: ..../.../....

발급기관: .....

발급일: ..../.../20...

2. 인력 및 교육

내용	발급 시점/직전 보고 기간	현재
인원 수: 품질관리(QA 보증 및 QC 시험·검사)/생산(직접 종사자)/기타 간접 인원/시설 총 임직원 수	.../.../.../...	.../.../.../...
이수 인원 수: 식품안전 지식 교육/기초 GMP 교육/관련 전문 교육·훈련/총 임 직원 수	.../.../.../...	.../.../.../...
성명 및 전문 학위: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시설의 전문책임자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생산부서장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품질관리부서장(또는 QA 부서장, QC 부서장)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3. 시설 · 설비

설비 배치도 및 주요 설비 목록	변경 없음	변경 있음 <sup>3</sup>
	- 시설의 전체 배치도	<input type="checkbox"/>
- (각) 건강보호식품 생산 공장의 배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험 · 검사실 배치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강보호식품 생산 공장의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각) 건강보호식품 생산 공장의 IPC 모니터링 설비 및 시험 · 검사 설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건강보호식품 생산 공장의 보조 설비(HVAC, RO, 압축공기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4. (유효한) 공표 건수 및 (보고 기간 중) 생산 실적

No.	제품명 <sup>5</sup>	제품 성분 <sup>6</sup> (정제, 앰플 등 1 단위당 함량 mg, IU 등)	접수증 번호 (발급일 )	해당 시설 명의로 공표한 경우	공표를 위임받은 기타 조직 · 개 인 (명칭 명시)	해당 시설로 생산 이전 통지서 제출 번호 및 일자 (있는 경우)	보고 기간 중 생산된 로트	수량 <sup>4</sup>				위반 및 처리 <sup>8</sup> (해당 하는 경우)
								생산 완료	시료 채취 <sup>7</sup>	출고	재 고	
정제												
1.	.....	B1: ....mg	.../...	<input type="checkbox"/>	.....	.../...	로트...	..... 알	..... 알	..... 알	..... 알	..... .

		B12: ...mcg					로트...	..... 알	..... 알	..... 알	..... 알	..... .
2.	.....	.....: .....mg	.../...	□	.....	.../...	로트...	..... 알	..... 알	..... 알	..... 알	..... .
		.....: .....mg					로트...	..... 알	..... 알	..... 알	..... 알	..... .
<b>절단 앰플</b>												
3.	.....	..... mg	.../...	□	.....	.../...	로트...	...개	...개	...개	...개	..... .
		..... mg					로트...	...개	...개	...개	...개	..... .
총 수량			...제품	...제품	...제품		...로트	..... 단위		..... 단위		

### 시설 책임자

(서명 및 직인 날인)

<sup>3</sup> 시설이 자체 평가·심사 및 통제로 관리할 수 있으나, 기발급된 범위를 변경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거나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안전성·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변경 내용이 반영된 도면, 목록 및 이에 상응하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첨부한다)에 한하여 기재한다.

<sup>4</sup> 완제품(정제, 앰플(액상), 용기(반고형), 병/보틀(액상), 파우치/포(분말, 액상, 반고형), 박스(분말, 액상) 등) 기준으로 기재한다.

<sup>5</sup> 동일 제형군별로 순서를 배열한다.

<sup>6</sup> 영양가 또는 생물학적 작용이 있는 성분에 한하여 기재한다.

<sup>7</sup> 출하 전 평가 및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험·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검사를 의뢰한 경우

<sup>8</sup> 결정서 번호, 점검·검사단 명칭, 위반 형태, 취소된 접수증 번호, 회수된 로트 번호, 해당 회수 제품 수량, 부과된 벌금액(백만 베트남 동).

시험·검사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 ...년 ...월 ...일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지정 범위 변경·추가/지정  
갱신 신청서

수신: (지정기관)

1. 시험·검사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2.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3. 시험 활동 등록증 번호: ..... 발급일: .....

4. 인정 결정서/인정서 번호: ..... 발급일: .....

5. 지정 신청 형태

지정 신청

지정 범위 변경·추가 신청

지정 갱신 신청

6. 지정 신청 범위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 범위 (해당되는 경우)	인정기관 명칭 (해당되는 경우)*

\* 본 열에는 인정된 시험·검사 방법에 상응하는 인정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7. 평가 개시 희망 일자: .....년 ...월 ...일

8. 본 기관은 정부의 .....년 ...월 ...일자 제...../2026/ND-CP 호 시행령(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 및 시행을 위한 조직·지도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기관장**

(서명 및 직인 날인)

시험·검사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년 ...월 ...일

**보고서**

**시험·검사기관 역량 보고**

1. 시험·검사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2.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3.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현황:

No.	성명	전문교육 수료증	관리체계 교육 수료증	현재 담당 업무	시험·검사 분야 경력	비고

4. 설비

4.1. 검정·교정이 필요한 설비

No.	설비 명칭	측정 범위, 정확도 등급	검정·교정 주기	최근 검정·교정 일자	검정·교정 기관	비고

4.2. 기타 설비

No.	설비 명칭	기술적 특성	사용 개시 일자	비고

5. 시험·검사기관의 면적 및 환경 조건

5.1. 시험·검사기관 각 부서의 배치도 및 면적

5.2. 시험·검사기관 각 부서의 환경 조건

- 온도 조절 설비;
- 환기 및 유해가스 배출 능력;
- 기타 보장 조건(진동, 분진, 소음, 조명, 방사선 등 방지).

5.3. 시험·검사기관 임직원을 위한 보호 및 산업안전 조건

6. 지정 신청 시험·검사 항목 목록: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 범위 (해당되는 경우)	숙련도 시험/ 시험실 간 비교 결과*

\* 참여한 프로그램명, 항목, 방법, 시료 매트릭스 및 결과를 명확히 기재한다.

7. 최근 1년간 시험·검사기관의 활동 실적: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총 시료 수	비고

8. 시험·검사기관의 서약

- 지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 시험·검사기관 평가 실시 시 평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기관장

(서명 및 직인 날인)

시험·검사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 ...년 ...월 ...일

보고서

시험·검사기관 활동 결과 보고(연간/지정 기간 내)

1. 시험·검사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2.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3. 교육: 시험·검사기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 현황

No.	성명	직위	참여 교육 과정	기간	취득 결과	비고

4. 설비

4.1. 검정·교정 완료 설비

No.	설비 명칭	측정 범위, 정확도 등급	검정·교정 주기	최근 검정·교정 일자	검정·교정 기관	비고

4.2. 신규 추가 설비

No.	설비 명칭	기술적 특성	사용 개시 일자	비고

5. 지정된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법 위 (해당되는 경우)	비고

6. 시험·검사 결과의 품질 보증(숙련도 시험 참여/시험실 간 비교):

No.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시료 매트릭스	주관 기관	참여 기간	결과

7.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 활동 결과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총 시료 수	부적합 시료 수

기관장

(서명 및 직인 날인)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년 ...월 ...일

평가 조서

시험·검사기관 평가

..... 시험·검사기관 평가단은 지정기관의 .....년 ...월 ...일자 제.../QD-...호 결정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평가단장, 서기 및 각 위원의 성명 기재)

1. 시험·검사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2. 평가단의 결론

2.1. 적합 사항:

2.2. 부적합 사항(있는 경우):

No.	부적합 사항	근거/기준

2.3.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대한 건의(다음 3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

제 1 의 경우: .....(시험·검사기관 명칭[..... 소속]을 아래 지정 범위에 대하여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범위 (해당되는 경우)

제 2 의 경우: .....(시험·검사기관 명칭[..... 소속]을 위 부적합 사

항의 전부를 보완 완료한 후 아래 지정 범위에 대하여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No.	식품·상품	시험·검사 항목명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범위 (해당되는 경우)

제 3 의 경우: .....(시험·검사기관 명칭[..... 소속]을 아래 지정 범위에 대하여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3. 본 조서는 평가단 구성원 .....명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기타 의견(있는 경우): .....

4. 시험·검사기관의 의견: .....

5. 본 조서에 첨부된 기타 자료: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평가단 서기

평가단장

(서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및 성명 명확 기재)

(서명 및 성명 명확 기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년 ...월 ...일

보고서

시정 조치 결과 보고

수신: (지정기관)

1. 평가를 받은 시험·검사기관 명칭:
2. 지정 번호(해당되는 경우):
3. 발견된 부적합 사항:
4. 원인:
5. 시정 조치 내용:
6. 시정 조치 결과:
7. 관리 체계 보완을 위하여 수반된 변경 사항(해당되는 경우)

기관장

(서명 및 직인 날인)

보고자

(서명 및 성명 명확 기재)

8. 평가단 구성원의 심사 의견(서명 및 성명을 명확히 기재):

.....  
.....

9. 평가단장의 결론:

.....  
.....

....., ...년 ...월 ...일

**평가단장**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지정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QD-...

....., ...년 ...월 ...일

**결정서**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결정**

**지정기관장**

2010년 6월 17일자 식품안전법에 의거;

정부의 2026년 .....월 .....일자 제...../2026/ND-CP 호 시행령(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 및 시행을 위한 조직·지도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에 의거;

..... 등록 신청서에 의거;

..... 시험·검사기관 평가 조서에 의거;

..... 지정 조치 결과 보고서(있는 경우)에 의거;

.....의 제안에 따라;

(지정기관장) .....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조.** 본 결정에 첨부된 지정 범위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명칭) [..... 소속, 주소 .....]를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시험·검사기관 코드 번호: .....

**제 2 조.** 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 3 조.** (시험·검사기관 명칭)은 ..... 소속으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관할 국가관리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정기관장

수신처:

(서명 및 직인 날인)

- 상기와 같음;
- 관련 기관(참고용);
- 소관 부처(보고용);
- 중앙직할 성·시 인민위원회;
- 보관: 지정기관.

### 지정 범위

(지정기관의 .....년 ...월 ...일자 제.../QE-호 결정에 첨부)

No.	시험·검사 항목명	식품·상품	시험·검사 방법	검출한계/정량한계/측정범위 (해당되는 경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	.....	.....	.....

시험·검사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

국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는 시험에 사용된 시료에 한하여 유효하다)

1. 시료명: (시험·검사 시료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시료 번호:
3. 시료 설명: (접수 시 시료의 상태, 시료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 시료의 상태)
4. 시료 보관 기간:
5. 시료 채취일:
6. 시료 접수일:
7. 시험·검사 기간:
8. 시료 제출처:
9. 첨부 서류: (첨부된 공문 또는 관련 서류의 내용, 번호, 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한다)
10. 시험·검사 결과(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항목에 한한다)::

No.	시험·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단위	결과	... <sup>1</sup> 과 비교

11. 결론: .....

(시료가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다)

12. 비교: (해당되는 경우 기재한다)

기관장  
(서명 및 직인 날인)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

<sup>1</sup> QCVN ... / TCVN ... / 결정 제...호 / 생산시설이 공표한 자가기준 등과 비교하여 기재한다. 관리요구에 따라 새로 발생한 시험·검사 항목으로서 기술규격, 표준 또는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년 ...월 ...일

심사조서

시설 식품안전 조건 심사

.....의 .....년 ...월 ...일자 제.....호 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오늘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심사단은:

- 1 ..... 단장
- 2 ..... 위원, 서기
- 3 ..... 위원
- 4 ..... 위원
- 5 ..... 위원

다음 시설에 대하여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다: .....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대표자: 1. ....

2. ....

심사 결과

I. 시설의 행정·법적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서(있음/없음):

번호: ..... 발급일: .....

2. 시설 책임자 및 식품을 직접 생산·영업하는 자의 식품위생·안전 교육 이수

확인 여부:

규정에 적합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 사유:

3. 시설 책임자 및 식품을 직접 생산·영업하는 자에 대한 군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 적합 확인서

규정에 적합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 사유:

**II. 식품안전 조건에 대한 현장 점검**

항목 그룹	참조 조항	평가 항목 그룹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완 기한
			적합	부적합	
1	<b>식품안전법:</b> 제 19 조 제 1 항 a 점; 제 20 조 제 1 항 a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b>생산·영업 장소</b> (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식품에 유해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 및 기타 유해 요인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등)			
2	<b>식품안전법:</b> 제 19 조 제 1 항 a 점; 제 25 조 제 2 항;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b>공장 구조 및 생산·영업 배치</b>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세척이 용이하며, 제품에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증기 응축 또는 물 고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전처리 및 가공 공정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향 원칙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등)			
3	<b>식품안전법:</b>	<b>생산·영업 설비</b>			

	제 19 조 제 1 항 c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전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는 방수성이 있어야 하고, 제품에 독성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등)			
4	<b>식품안전법:</b> 제 19 조 제 1 항 c 점, d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b>공장 및 설비 위생</b> (허용된 목록에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유지·보수 도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공장 위생을 이행하여야 한다 등)			
5	<b>식품안전법:</b> 제 19 조 제 1 항 e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b>직접 생산 종사자 및 작업자 위생</b> (직접 생산 종사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복 착·탈의 구역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 위생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작업자 위생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등)			
6	<b>식품안전법:</b> 제 10 조 제 1 항; 제 2 항 a 점; 제 19 조 제 1 항 b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b>식품 생산의 원료 및 투입 요소</b> (용수 및 얼음은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 보존료, 가공보조제는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원료는 식품 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등)			

7	<p>식품안전법: 제 19 조 제 1 항 c 점; 제 20 조 제 1 항 b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p>	<p><b>유해 동물 방지 및 폐기물·폐수 처리</b> (유해 동물 방지 설비를 갖추고 방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폐수는 환경에 배출하기 전에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고형 폐기물의 수거·처리 설비 또는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등)</p>			
8	<p>식품안전법: 제 18 조; 제 10 조 제 2 항 b 점, c 점; 제 19 조 제 1 항 c 점, d 점; 제 20 조 제 1 항 a 점, c 점; 제 21 조;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p>	<p><b>포장, 표시, 보관 및 운송</b> (포장재는 제품에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시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품 유형별로 적합한 보관 장소 및 운송 수단을 갖추고, 운송 조건을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등)</p>			
9	<p>식품안전법: 제 11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1 항 d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p>	<p><b>기록 및 추적관리</b> (생산 과정에서 원료 및 투입 자재의 수령·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GMP, SOP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품의 추적을 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등)</p>			
10	<p>식품안전법: 제 19 조 제 1 항</p>	<p><i>(HACCP 원칙에 따른 품질관리 프로그램</i> <i>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i></p>			

	d 점; <b>해당 기술규격</b>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경우) <b>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조건</b> (식품안전 보장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및 위생관리기준(SOP)을 이행하여야 한다; HACCP, ISO 22000 등 선진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권장한다)			
<b>총 평가 항목 그룹 수:</b>		<b>/10 개 항목 그룹</b>			

**III. 시료 채취(해당되는 경우):**

1. 채취 시료에 관한 정보(시료 종류, 시료 수량, 포장 상태, 시료 보관 상태 등)
2. 분석 항목 지정(시료 채취 조서 첨부):

**IV. 평가 및 결론:**

1. 시설의 식품안전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입지 조건, 시설·설비, 장비·기구, 원료, 용수, 위생 관리 등): .....
2. 미비 사항 및 조치 방안: .....
3. 결론: .....

적합

부적합

보완 후 재검토

보완 기한: 심사일로부터 일 이내.

4. 심사 대상 시설의 의견: .....

본 조서는 .....시 .....년 .....월 .....일에 종료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심사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시설 책임자가 보관한다.

시설 대표자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심사단장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V. 보완 조치 평가 결과(보완 후 재검토 대상의 경우)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년 ...월 ...일

심사단장

(서명 및 성명 명확히 기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인증서

식품안전 조건 충족 시설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  
(인증서 발급기관의 명칭)

인증 | CERTIFICATION

시설/Establishment: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Email:

다음 제품의 생산·영업에 대하여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한다:

Has been found to be in compliance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for following products:

- 1.
- 2.
- 3.

발급번호/Number: xxxx/yy/발급기관의 약칭 - zz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Valid until (date/month/year)

....., ...년 ...월 ...일

....., day/month/year

(기관장은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한다.)

**비고:**

1, 2, 3...: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I 및 부록 IV에 따라 해당 생산시설의 제품/제품군 명칭을 기재한다.

xxxx: 권한기관이 해당 연도에 발급한 인증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yy: 인증서 발급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기재한다(예: 2025년은 25로 기재한다).

zz: 생산·영업 시설이 식품안전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인증을 받은 소재지의 성급 행정 단위 코드 번호를 기재한다.

(\*): 사업자등록기관이 부여한 시설 코드 번호를 기재한다.

## 부록II

보건부 소관 식품·상품의 제품/제품군 목록

(2026년 1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제46/2026/ND-CP호에 첨부)

No.	제품/제품군의 명칭	비고
1	병입 음용수, 천연 광천수, 식용 얼음(즉석 섭취용 얼음 및 식품 가공용 얼음)	농업환경부 소관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의 보관·가공에 사용되는 얼음은 제외한다.
2	기능성식품	성급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용도 식품, 보충식품 및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품은 제외한다.
3	미량영양소	
4	식품첨가물(식품 향료 포함) 및 식품 가공보조제	
5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	농업환경부 및 산업통상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로서 동일 시설에서 생산되어 해당 시설의 식품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통상부 및 농업환경부의 목록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제품	

### 부록Ⅲ

농업환경부 소관 식품·상품의 제품/제품군 목록

(2026년 1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제46/2026/ND-CP호에 첨부)

No.	제품/제품군의 명칭	비고
I	<b>곡류</b>	
1	곡류	
2	정미·절단·탈피·겨제거·분쇄·발아·열처리 등으로 1차 가공 또는 가공한 곡류	파우더·전분 및 파우더·전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제외한다.
II	<b>육류 및 육류 제품</b>	
1	신선육, 빙장육, 냉장육, 냉동육(전체·발골·절단·분쇄·다짐·미트볼 등)	
2	가축·가금의 식용 부산물(내장, 뼈, 다리, 목, 날개, 지방, 피 등)	
3	가축·가금의 육류 및 식용 부산물을 가공한 제품(건조, 훈제, 캔, 열처리, 절임, 콜라겐, 젤라틴 등)	보건부가 관리하는 기능성 식품은 제외한다.
4	육류를 함유한 혼합 제품((저(gio), 짜(cha), 스프링롤(nem), 햄, 살라미, 소시지, 파테, 미트볼, 오일담금, 스프, 즙액 등)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제과류 제품은 제외한다.
III	<b>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양서류 포함)</b>	
1	활수산물, 신선·빙장·냉장 수산물(전체·발골·다짐·미트볼·절단·탈피 등)	

2	식용 수산 부산물(피부, 지느러미, 부레, 지방, 간, 어란 등)	
3	수산물 및 식용 수산 부산물을 가공한 제품(발효·염장·가열·훈제·건조·절임·담금·튀김·즙액·젤라틴, 콜라겐 등으로서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건부가 관리하는 기능성 식품은 제외한다.
4	식용으로 사용하는 정제 또는 미정제 수산물 유래 식용 지방 및 기름	보건부가 관리하는 수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한다.
5	수산물을 파우더, 전분, 튀김, 가공유, 식물성 유지와 혼합한 제품(새우칩, 생선칩, 오징어칩 등 포함)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제과류 제품은 제외한다.
6	식용 미역, 해조류 또는 미역, 해조류 제품	보건부가 관리하는 해조류·조류 유래 기능성식품은 제외한다.
<b>IV</b>	<b>채소·근채·과실 및 그 가공제품</b>	
1	신선 채소·근채·과실 및 1차 가공 제품(절단, 껍질제거, 씨앗제거, 과육 분리, 분쇄 등)	종자용 채소·근채·과실 및 종자는 제외한다.
2	가공 채소·근채·과실(발효, 건조, 열처리, 분말화, 캔포장, 절임, 담금, 설탕절임, 튀김옷 처리, 추출액, 주스 등)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제과·잼·사탕·오매 및 청량음료 제품은 제외한다.
<b>V</b>	<b>난류 및 관련 가공품</b>	
1	육상 동물 및 양서류의 난류	

2	육상 동물 및 양서류의 알을 1차 가공 또는 가공한 제품(껍질제거, 냉동, 분말화, 열처리, 염장, 한약재 침지 등)	
3	난류 또는 난류가루를 함유한 혼합 식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난류 또는 난류가루를 함유한 제과 제품은 제외한다.
VI	<b>원유</b>	
VII	<b>꿀 및 꿀 가공제품</b>	
1	천연 꿀, 농축 꿀, 희석 꿀	
2	꿀의 첨가 여부와 관계없는 밀랍, 꽃가루, 로열젤리	
3	꿀, 밀랍, 꽃가루 또는 로열젤리를 함유한 제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꿀 함유 제과·잼·사탕 및 청량음료는 제외한다. 보건부가 관리하는 기능성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한다.
VIII	<b>유전자변형식품</b>	
IX	<b>소금</b>	
1	천일염, 암염	
2	정제염, 가공염 및 기타 성분과 혼합한 소금	
X	<b>향신료</b>	
1	단일성분 향신료, 혼합 향신료, 동물성·식물성 유래 향신료(육류·뼈에서의 향료 분말, 추출액, 머스터드 등)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파우더·전분 가공제품(인스턴트면, 즉석죽 등)에 동봉되는 향신료는 제외한다.

2	소스 및 소스용 가공품	
3	장류 및 조미 소스	
4	Capsicum 속 또는 Pimenta 속에 속하는 과일(신선, 건조, 분쇄 또는 분말 형태)	
<b>XI</b>	<b>설탕</b>	
1	사탕수수 설탕 또는 사탕무 설탕 및 화학적으로 정제한자당(고체 형태)	
2	기타 당류(화학적으로 정제된 유당, 엿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형태의 것; 향료 또는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당 시럽; 천연 꿀과 혼합 여부와 관계없는 인공 꿀; 캐러멜 포함)	
3	당의 추출 또는 정제로부터 얻은 당밀	
<b>XII</b>	<b>차</b>	
1	신선 또는 가공차(향료 첨가 여부와 관계없음)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청량음료 형태로 조제된 제품 및 차를 함유한 제과·잼·사탕 제품은 제외한다.
2	기타 식물로 만들어진 차 제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청량음료 형태로 조제된 제품은 제외한다.
<b>XIII</b>	<b>커피</b>	
1	신선 또는 건조 커피콩, 커피 추출물, 정제물 및 농축물	

2	로스팅 여부와 관계없는 커피(카페인 제거 여부와 관계없음); 커피 과피 및 커피 은피; 일정 비율의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설탕, 우유 또는 크림의 첨가 여부와 관계없는 즉석용 분말 추출 제품; 커피를 함유한 가공제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청량음료 형태로 조제된 제품 및 커피를 함유한 제과·잼·사탕 제품은 제외한다.
<b>XIV</b>	<b>코코아</b>	
1	신선 또는 건조 코코아너트(분쇄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 또는 로스팅한 것); 코코아 열매껍질·너트 껍질·속껍데기 및 기타 코코아 부산물; 지방 제거 여부와 관계없는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지방 및 코코아 오일;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코코아 분말	
2	로스팅 또는 비로스팅 분말 형태, 농축 형태, 액상 형태, 설탕·우유·크림의 첨가 여부와 관계없는 즉석 음용 분말 제품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청량음료 형태로 조제된 제품 및 코코아를 함유한 제과·잼·사탕 제품은 제외한다.
<b>XV</b>	<b>후추</b>	
1	후추(Piper 속) 건조·신선·분쇄·분말 형태	
2	Capsicum 속 또는 Pimenta 속에 속하는 과실(신선, 건조, 분쇄 또는 분말 형태)	
<b>XVI</b>	<b>캐슈너트</b>	
1	캐슈너트	
2	캐슈너트 가공제품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캐슈너트를 함유한 제과·잼·사탕 제품은 제외한다.

XVII	기타 농산 식품	
1	각종 종실류(해바라기씨, 호박씨, 수박씨 등)로서 가공 여부와 관계없는 제품	
2	기타 식물성 식품(원형 상태 또는 1차 가공·가공 제품: 죽순, 목이버섯, 버섯류; 대두 제품(유지는 제외); 일부 식물의 식용 가능한 껍질, 뿌리, 잎, 줄기, 꽃 등)	보건부가 관리하는 약재 및 기능성식품으로 사용되는 대상은 제외한다.
3	제비집 및 제비집 가공제품	보건부가 관리하는 약재 및 기능성식품으로 사용되는 대상은 제외한다.
4	식용 곤충 유래 제품(메뚜기, 귀뚜라미, 누에고치 등)	
XVIII	소관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의 생산·가공·영업 과정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	
XIX	농업환경부 소관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제품의 보관·가공에 사용되는 일음	

## 부록Ⅳ

산업통상부 소관 식품·상품의 제품/제품군 목록

(2026년 1월 26일자 정부 시행령 제 46/2026/ND-CP 호에 첨부)

No.	제품/제품군의 명칭	비고
I	<b>맥주</b>	
1	생맥주	
2	병맥주	
3	캔맥주	
II	<b>주류, 주정 및 알코올 함유 음료</b>	동물성·식물성·광물성 및 버섯 침출주와 기능성식품으로 공표된 주류는 제외한다.
1	와인	
1.1	비탄산 와인	
1.2	탄산 와인(스파클링 와인)	
2	과실주	
3	리큐르	
4	도수가 높은 술	
5	술, 보드카	
6	기타 알코올 음료	
III	<b>청량음료</b>	보건부 소관 광천수 및 정제수는 제외한다.
1	캔 음료(채소즙·과일 주스 포함)	
2	사용 전에 희석이 필요한 청량음료	

3	즉석 음용 청량음료	보건부 소관 광천수 및 정제수는 제외한다.
IV	가공 유제품	보건부가 관리하는 미량영양소 보충식품 및 기능성식품은 제외한다.
1	액상 유제품(향료 또는 기타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액상유제품 포함)	
1.1	파스퇴르(Pasteur) 방법으로 살균한 제품	
1.2	UHT 또는 기타 고온 살균 방법으로 멸균한 제품	
2	발효 우유	
2.1	액상 형태	
2.2	농축 형태	
3	분유	
4	연유	
4.1	당 첨가	
4.2	당 무첨가	
5	크림	
5.1	파스퇴르(Pasteur) 방법으로 살균한 제품	
5.2	UHT 방법으로 멸균한 제품	
6	두유	
7	기타 유제품	
7.1	버터	
7.2	치즈	

7.3	기타 가공 유제품	
V	식물성 유지	보건부가 관리하는 미량영양소 보충식품 및 기능성식품은 제외한다.
1	참기름(참깨유)	
2	쌀겨	
3	대두유	
4	땅콩유	
5	올리브유	
6	팜유	
7	해바라기씨유	
8	홍화씨유	
9	면실유	
10	야자	
11	팜씨유 또는 바바수 오일	
12	유채유 또는 겨자유	
13	아마씨유	
14	피마자유	
15	기타 식물성 유지	
VI	분말 및 전분	보건부가 관리하는 미량영양소 보충식품 및 기능성식품은 제외한다.
1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2	곡물가루	

3	감자가루	
4	맥아: 볶은 것 또는 볶지 아니한 것	
5	전분: 밀, 옥수수, 감자, 카사바 및 기타	
6	이눌린	
7	밀 글루텐	
8	반죽 제품(가열 조리 여부와 관계없음):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인스턴트면, 납작면, 뇨키, 라비올리, 칸넬로니, 즉석죽, 쌀국수, 피(pho), 분(bún), 당면 등	
9	카사바 전분 제품 및 전분으로 제조한 대체 제품 (조각, 입상, 분말, 체질한 분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b>VII</b>	<b>과자, 잼, 사탕</b>	보건부가 관리하는 미량영양소 보충식품 및 기능성식품은 제외한다.
1	달거나 짠 크래커 또는 무가당·무염 크래커	
2	비스킷, 파이 및 기타 유사한 구운 과자류	
3	반죽 과자	
4	빵	
5	케이크	
6	카카오를 함유하지 않은 설탕 함유 경질·연질 캔디류	
7	설탕 코팅 여부와 관계없는 껌	
8	각종 초콜릿 캔디류	

9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의 첨가 여부와 관계 없이 가열 조리하여 제조한 과실 잼, 젤리, 과일 또는 견과류 푸레 및 페이스트	
10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의 첨가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보존한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 가능한 식물 부분	
11	기타 과자·잼·사탕 제품	
VIII	소관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의 생산·가공·영업 과정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구	